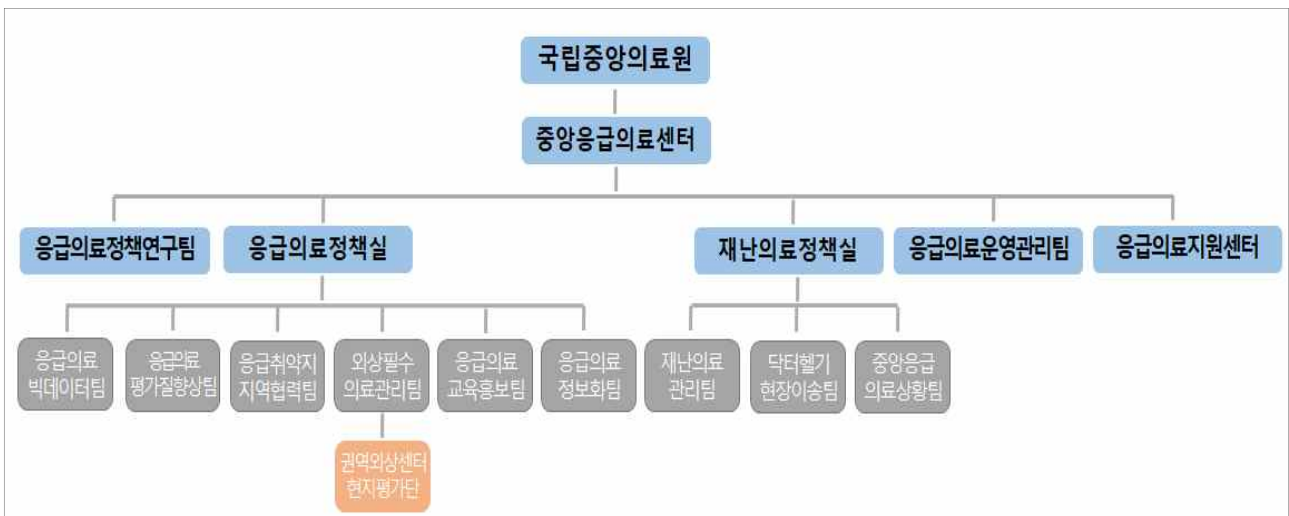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신규 위촉 안내

2023. 6.

1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운영 개요

-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근거하여 권역외상센터 기능수행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상의료 관련 임상 전문가들로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용하고자 함
- (운영주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조직체계)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필수의료관리팀에 비상근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용



- (구성)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 (주요역할) 권역외상센터의 평가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외상센터로 선정 또는 지정된 기관
현지평가단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또는 원격으로 실시하는 서면 심사 및 의무기록 평가 - 의무기록 선별조사, AIS Coding 신뢰도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피평가기관의 자체 개선을 위한 자문 등

2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운영기준

□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위촉

- (위 촉) 기준에 충족하는 전문의 중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위촉
- (절 차)



- (위촉기한) 위촉일로부터 3년

※ 자격유지 요건 미충족 시 자격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해촉사유) 다음의 경우 위촉기한 경과 전에 해촉할 수 있으며, 1)~3)의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위원회를 거쳐 해촉할 수 있음

- 1) 일정기간 동안 평가 경력이 없는 자
- 2) 평가단으로서의 객관성 및 중립성과 품위를 지키지 못한 자
- 3) 평가단 자체평가에서 평가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 4) 현지평가위원 스스로 현지평가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운영비 기준

○ (운영비 기준)

- 국립중앙의료원 「강사 및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및 「여비규칙」에 의하여 현지평가단 활동에 대한 현지평가 수당 및 출장여비를 지급(첨부 1 참고)

현지평가단 수당 내역		비고
[일비]	국립중앙의료원 「여비규칙」에 따라 지급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제3호, 제4호 기준 적용
[식비]	국립중앙의료원 「여비규칙」에 따라 지급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제3호, 제4호 기준 적용
[숙박비]	국립중앙의료원 「여비규칙」에 따라 실비 지급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제3호, 제4호 기준 적용
[운임비]	국립중앙의료원 「여비규칙」에 따라 실비 지급 (자동차 운임 포함) ¹⁾	제3호, 4호 기준 적용
[현지평가 수당] ²⁾	국립중앙의료원 규칙 제2-293호(강사 및 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칙)	예산범위 내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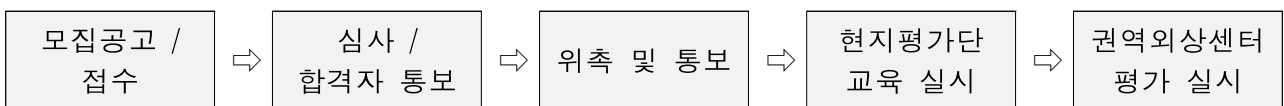
1) 단, 자동차 운임은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외상사업관리단-180(2017.2.14.))

- ① 평가기관 사전 미공개 원칙에 따라 교통편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평가 시작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립중앙의료원 규칙 제2-293호(강사 및 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급. 단, 현지평가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함

3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모집

- (목적) 외상의료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상센터 및 관련 전문의로 구성
- (모집주기) 현지평가단 해촉 등의 사유로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에만하여 모집
- (모집방법) 온라인 지원 ...[붙임] 참고
 - 각 전문가 학회* 및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발송 및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공지
 - * 대한외상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 (지원자격)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1)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외상환자 진료 및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2) 연 3~5회의 현지평가 및 교육 참석(근무지 내·외 출장)이 가능한 자
- (기타사항)
 - 권역외상센터 선정·지정 기관 소속 또는 임상전문가로서 평가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응급의료기관 임상전문가로서 평가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AAAM 공인인증 AIS certificate를 취득한 자 우대
- (모집절차)



붙임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신규모집 신청방법

기능수행평가 시스템 (<http://eqis.nemc.or.kr>) 접속하여 로그인

-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http://portal.nemc.or.kr>) 계정과 연동



○ 권역외상센터 평가 → 평가단 신청관리 → 평가단 모집관리

○ '2023년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신규모집' 공고 돋보기 아이콘 클릭



○ ‘평가단 모집관리’로 이동

평가단모집 관리

평가단모집 공고

제목	2023년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신규모집	종류	평가단모집	평가구분	권역외상센터평가
작성자		등록일자	2023-05-22 13:11:52	게재상태	공고중

내용

호상 필수요건관리입니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위 심의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을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기간 : 2023.06.22(목) ~ 2023.07.06(목) 17:00
 나.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
 다. 문의사항 :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 필수요건관리팀(02-6382-3410)

신청기간 : 2023-06-22 ~ 2023-07-06 응모인원 : 50

비밀번호

평가단 신청으로 이동 목록

○ 평가단 신청자 상세정보 입력 후 저장

평가단 신청자 상세정보

평가구분: 권역외상센터평가

평가명: 2023년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신규모집

비밀번호: 4132242222

소속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연락처: [input field]

직책 또는 면허번호: [input field]

주소: 41984 대구광역시 동구 칠곡로 130 (삼덕동2가, 경북대학교병원)

휴대폰번호(본인수신가능): [input field]

이메일: [input field]

주요경력: [input field]

평가위원 경력 유무: 유 무

활동 연도 지역 #1: [input field]

활동 연도 지역 #2: [input field]

평가위원 경력: [input field]

첨부파일: [input field]

약관 및 정보수집 동의: 의료기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저장 목록

- ① 기본정보는 인트라넷 가입정보를 그대로 표출
- ② 필수 입력 항목(*): 미 입력 시 저장 불가(팝업창 확인)
- ③ 은행명, 계좌번호: 본인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수당, 여비 지급 활용)
- ④ 평가위원 경력 유무: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 경력 사항
- ⑤ 첨부등록: 면허증 또는 '주요경력'에 작성한 재직/경력증명서 스캔하여 업로드
 - 첨부파일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하며 용량은 40MB로 제한
- ⑥ 재직/경력 증명서는 근무 부서 명시

첨부1

국립중앙의료원 여비규칙(2-380호)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제10조~제13조 및 제1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제2호	실비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3호 제4호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KTX 특실, 2등급은 KTX 일반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2. 선박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2등급은 일반실을 말하며, 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항공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4. 자동차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를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업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연료비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연료비 단가 산정을 적용
 - 통행료 지급기준 : 통행영수증 금액
 - 위와 유사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가용을 이용 할 수 있다.
6. 숙박비 증빙이 없거나 지인숙박의 경우 정액 2만원을 지급한다.

서 약 서

본인은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평가 안내서와 현지평가단 지침서 등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조사할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
2. 권역외상센터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사건」을 피력하거나 현지평가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현지평가단 평가위원은 평가를 통해 알게 된 평가대상기관의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현지평가단 평가위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5. 평가 시 피평가자에게 어떠한 금품 수수, 접대, 편의 등을 받지 않는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 평가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서약인: _____ (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귀중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수락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1. 나는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서 한국외상의료 질 향상의 중추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주어진 소임을 다한다.
2. 나는 본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문·심의하며, 위원회의 목적성을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나는 평가위원으로서 회의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주관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4. 본인은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사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약속한다.
5. 나는 회의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 발생하는 제반의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됨을 인지하고, 비밀유지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0000년 00월 00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단”에 참석한 평가위원의 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당 지급 등 회계처리, 본인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안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를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소속, 직위, 휴대전화번호, e-mail, 전공 분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출증거서류 보관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자료를 삭제합니다.
 - 보유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제2항
 - 보유기간 : 5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 지급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각종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 위 개인정보 중 선택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회의 참석과 관련된 안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기타소득 지급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제1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